

### 주목할 만한 내용:

#### Covid-19 관련 기업 지원 조치

1. 세금 및 토지사용료 납기 연장에 대한 시행령
2. 2020년 세무감사.조사계획 실행에 대한 세무총국의 신규지침

#### 기타규정

3.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리스크
4.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 통지가 발표되기 전후) 수출시 계산서 사용
5. 베트남업체에 대한 차입자본 보증으로 소득을 얻는 외국업체에 대한 원천징수세 정책
6. 여러 당사자를 통해 구매/판매되는 재화에 대한 CPTPP 우대 관세율 적용

01

조세관리

02

법인소득세

03

개인소득세 및 노동관리

04

부가가치세

05

외국인계약자세

06

무역 및 관세

## 조세관리



### 신규규정

#### 세금 및 토지사용료 납기 연장에 대한 시행령초안

정부는 2020년 4월8일 제41/2020/ND-CP호 시행령을 발표하여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업체들에 세금 및 토지사용료 납기를 연장하였다. 시행령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적용 대상 및 범위:

- 다음과 같은 경제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개인 및 가족사업자 (지점과 독립적인 시설 포함):

##### (i) 생산분야:

- 농업, 임업 및 수산업
- 식품 제조 및 가공, 직조, 의류 생산; 가죽 및 관련제품의 제조;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코르크 생산; 짚 및 격자재 제조;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생산;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의 생산; 금속 제조, 가공; 금속 처리 및 코팅;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제조;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가구생산.

##### – 건설업

##### (ii) 산업 분야:

- 운송 및 창고 및 관련 지원활동; 숙박 및 catering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의료 및

사회 지원 활동; 부동산 활동;

- 취업활동; 여행사들의 활동, 관광투어 개최 및 홍보와 관련된 지원서비스;
- 창작예술 및 오락활동, 스포츠 활동; 동물원, 식물원 및 자연 보호구역의 활동; 놀이 공원 및 테마 파크 활동, 영화 상영 활동.

- 주요 기계제품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개인 및 가족사업자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개인 및 가족사업자인 고객들을 위한 지원조치를 실행하는 신용기관, 외국계 은행 지점. 중앙은행은 해당 신용기관, 외국 은행지점의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 2. 납부기한 연장은 법인세 ("CIT"); 부가가치세 ("VAT"); 개인소득세 ("PIT") 및 토지임대료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 법인소득세 ("CIT")의 FY 2019 확정신고 및 FY 2020 1분기, 2분기의 CIT 납기를 5개월을 연장한다. (확정신고금액을 납부한 경우 기타 세금의 납부해야할 금액과 상계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VAT")의 3월에서

6월까지 신고 (월간 신고의 경우) 및 FY 2020 1분기 및 2분기 (분기별 신고의 경우)의 납세 기한은 5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2020년12월31일 기한)

- 2020년에 발생한 개인소득세 ("PIT")의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개인, 개인단체 및 가족사업자에 적용된다.
- 토지 임대료의 2020년 최초 납부액의 납부기한을 5개월까지 연장한다. (2020년10월31일 기한)

#### 3. 납기 연장 신청절차

- 대상 사업자는 규정된 양식에 따라 세금 납기 연장 신청서를 월간/분기별 신고와 동시에 또는 2020년7월30일까지 조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조세당국은 토지 임대료 및 세금 납기 연장 신청을 받은 이후 납세자에게 적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다. 대신 조세당국은 연장기간동안 납세자가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연장가능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납부연장 불가를 통지하고 세금 및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 납기연장 기간 동안 (납세자의 납기연장 신청서에 근거) 연장된 토지 임대료 및 세금에 대한 지연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 조세관리



### 지침문서

#### 2020년 세무감사.조사계획 실행에 대한 세무총국의 신규지침

2020년 3월 세무총국은 Covid-19로 인해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직할도시 및 각 성 세무국에 세무 감사.조사 실행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i. 납세자 현장 세무감사.조사 실행전 사전 준비 업무에 집중한다: 납세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납세자 현장 세무감사.조사시간을 단축한다; 심층 분석을 수행하여 세무 감사.조사 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
- ii. 세무 리스크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감사.조사를 집중적으로 실행한다.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의 경우 세무 검사.조사를 실행하기 전에 세무 리스크를 분석하여 상위 조세당국에 보고 하여 세무감사, 조사 계획을 수정한다.

- iii. 상위 조세당국에 의해 지시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되지 않은 세무감사.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 iv. 세무 공무원들은 세무감사.조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전자화된 세무감사.조사 내역을 완전하게 작성해야 한다.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 법인소득세



### 지침문서

#### 자본양도에 대한 조세정책

외국 최상위 지배회사가 베트남 법인의 다른 외국 지배회사의 자본을 양도하는 경우:

- 외국 최상위 지배회사의 소득은 간접적인 자본양도로 간주되며 베트남에서 양도된 주식의 가치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 자본양도를 받는 회사 역시 외국 기업인 경우 외국에서 자본을 투자 받는 베트남회사가 대신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2020년3월1일 세무총국이 발표한 제866/TCT-CS호 OL)*

###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리스크

2019년 9월 16일 노동보훈사회부 제4038호/LDTBXH-PC호 OL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계산은 노동부 (제106호)의 규정을 따라야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 연간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에도 연간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 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야간근무 및 초과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 및 상여가 정상 근무 시간시 지급되는 금액보다 높고 위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PIT가 면제된다.

*(2019년11월12일 세무총국이 발행한 제4641/TCT-DNNCN호 OL)*

*OL상 CIT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손상 또는 분실된 용품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세정책

회사가 생산활동을 위해 공급업체와 공사설비 임대계약을 체결 후, 공사설비 보관 및 사용과정에서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설비의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 공급업체에 현금으로 보상해야하는 경우 (계약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음):

- 손상된 공사 설비를 공급업체에 반환한 경우 손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VAT 부과대상이 아니다. 보상금액 지급시 회사는 지급전표를 발행하고, 공급업체는 계산서가 아닌 보상금 수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지급전표 및 양측이 작성한 (보상해야 할 손상된 기계설비의 가치에 대한) 확인서가 회사의 과세소득 확정시 손금산입의 근거가 된다.
- 공사 설비가 분실되어 공급업체에 반환될 수 없을 경우, 공급업체는 회사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분실된 설비와 관련된 비용은 과세소득 확정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9년11월11일 호치민시 세무국이 발행한 제13316/CT-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 개인소득세 및 노동관리



### 지침문서

#### 고객과 함께 여행함으로써 얻게되는 직원의 이익에 대한 PIT 과세여부

직원이 회사의 고객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여행의 성격이 사업 목적인지 개인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PIT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출장목적의 여행의 경우 PIT 비과세를 위해 회사는 출장 승인서, 여행서류 (Travel Paper), 출장 보고서등의 충분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2020년 3월 2일 세무총국이  
발행한 제872/TCT-CS호 OL)

#### ODA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인 에 대한 PIT 면제 신청서 지연 제출 처벌 규정 미비

현행 조세규정에 따르면 ODA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PIT 면제 신청서 제출 지연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나, 외국인이 소득이 발생하고 PIT 면제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PIT 면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발주자 또는 계약자 (업체)가 현지 조세당국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또한, 조세당국의 기각을 피하기 위해 사업 발주자 또는 계약자(회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PIT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PIT 면제를 적용하였으나 조세당국으로 부터 면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적용하여 지연신고세 및 지연신고 이자가 부과 된다.

(2020년 03월 09일 하노이  
세무국이 발행한 제10268/CT-  
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 부가가치세

### 지침문서

#### VAT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매입VAT

VAT 부과 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매입VAT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다만, CIT상 손금 또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분류된다.

(2020년03월10일 세무총국이  
발행한 제986/TCK-KK호 OL)

####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나 세금코드를 말소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조세당국으로부터 계산서를 구매할 수 없음

회사가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세금코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조세당국으로부터 계산서를 구매할 수 없다. 회사가 해산, 파산 후 세금 청산신고 또는 세금코드를 말소한 이후 자산을 처분 시 구매자에게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조세당국으로부터 계산서를 구매할 수 있다.

(2020년3월 5일 세무총국이  
발행한 제923/TCT-CS호 OL)

#### 수출시 계산서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전환 통지 전후)

재화 및 용역을 수출하는 회사가 조세당국으로부터 제119/2018/NĐ-CP호 시행령 규정에 따른 전자계산서 사용 전환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회사는 수출 활동에 대해 상업 계산서(Commercial Invoice)만을 발행 할 수 있다.

(2020년3월2일 하노이 세무국이  
발행한 제9092/CT-TTHT호OL)

회사가 조세당국으로부터 전자계산서 사용 전환 통보를 받은 경우, 제119/2018/NĐ-CP호 시행령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을 수출할 때 상업계산서(Commercial Invoice)와 전자VAT계산서를 모두 사용 할 수 있다.

(2020년 3월19일 Binh Duong  
세무국이 발행한 제6281/CT-  
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목적으로만 사용가능

## 외국인계약자세

### 지침문서

**ODA 사업 및 양허성 차관을 시행하는 국내 하도급 계약자에 대한 VAT 정책:**

- ODA프로젝트 및 양허성 차관의 주계약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베트남 하도급 계약자는 법규정에 따라 VAT, CIT 및 기타 세금, 요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상기 프로젝트를 위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VAT는 환급되지 않다.
- 베트남 하도급 계약자가 재무부의 제2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1조 10항 조건을 충족한 경우 VAT 부과대상 영업/생산 활동에 사용된 재화 및 서비스의 매입 VAT를 공제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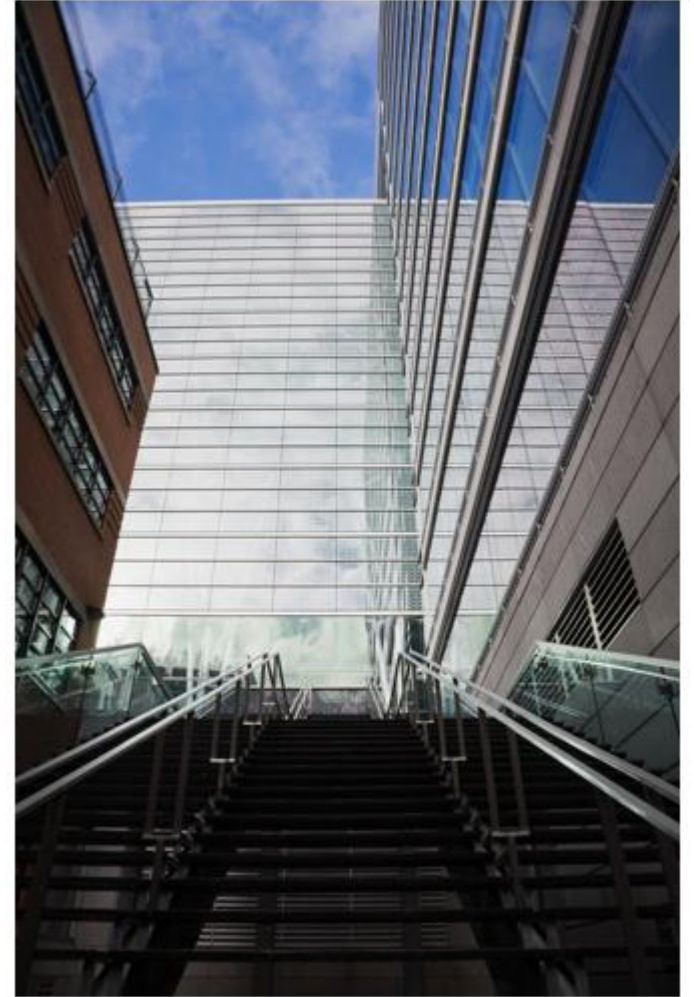
(2020년3월06일 하노이 세무국이 발행한 제9936/CT-TTHT호 제OL)

**베트남업체의 차입자본에 대한 보증으로 부터 소득을 얻는 외국인업체에 대한 원천징수세 정책:**

외국기업이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2부 제8조 2항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업체는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과세소득에 대한 간주세율 (예: VAT 5% 및 CIT 5%)을 적용하여 VAT 및 CIT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 기업의 보증 수수료로 인한 소득이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른 세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업체는 제156/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20조, 3항 b.2록의 지침에 따라 현지 세무국의 추가검토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20년3월9일 하노이 세무국이 발행한 제10266/CT-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 무역 및 관세



### 지침문서

#### 여러 당사자를 통해 구매·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CPTPP 우대 관세율 적용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서 상 최종 수입국 (일본으로 가정) 정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i. 베트남 세관신고서의 형식 및 정보에 대한 규정이 일본의 수입신고서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서에 commercial invoice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신고서의 유효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ii. 베트남 상품이 다수의 중개자를 통해 일본으로 판매되는 경우 중개자들에 의해 다수의 commercial invoice가 발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수입 신고서상 commercial invoice 번호가 베트남 수출 신고서의 commercial invoice 번호와 다르다는 것이 CPTPP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iii. 중개자를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여러 중개자를 통한 상품의 판매가 CPTPP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 중개자를 통해 거래된 상품이 CPTPP 협정 회원국에서 수입된 것을 입증가능하면 CPTPP 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020년03월13일 관세총국이 발표한 제1570/TCHQ-TXNK호 OL)

#### 수입품 라벨에 필수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의 면제

수입품의 오리지널 라벨에 제43/2017/NĐ-CP호에 규정된 필수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 OL은 제5189/TCHQ-GSQL호 OL의 III.1부 1.1항 d.2.6점 및 2020년 02월 11일자 제763/TCHQ-PC호 OL의 두번째 글의 지침을 대체한다.

(2020년3월11일 관세총국의 제1512/TCHQ-PC호 OL)

#### HS코드 및 관세율이 부정신고된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심사 강화

관세총국은 중안관리자료에 근거하여 HS코드 및 관세율이 잘못 신고된 모든 가솔린, 솔벤트, Ron 및 기타 석유제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된 경우를 적발하여 과세 및 징수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OL을 발행하였다.

(2020년 3월 4일 관세청국의 제1313/GSQL-GQ호 OL)

#### 해외 계약상대의 지정에 따라 on-spot 재화에 대한 ATIGA관세율 미적용

제08/2015/NĐ-CP호 시행령 제35조 1항 규정에 따라 on-spot 재화는 다음을 포함한다: (i) 해외 인도 목적으로 베트남내 지정 장소로 운반된 가공품, (ii) 자유무역지대("FTZ") 에서 국내로 수입된 제품 및 (iii) 외국 계약자와의 거래이나 국내로 운반되도록 지정된 재화.

그러나 제129/2016/ND-CP호 시행령 제4조에 따라 on-spot 재화 중 자유무역지대(FTZ)에서 국내로 수입된 경우에만 ATIGA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계약상대방과의 on-spot 재화 및 수출 재화로 자유무역지대(FTZ)로 부터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ATIGA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

(2020년03월13일 관세총국의 제1569/TCHQ-TXNK호 OL)

#### 특별검사대상인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통관전 특별검사대상 재화의 경우 회사가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제85/2019/NĐ-CP호 시행령 제24조 1항 a,b 또는 c ; 제23조 1항 a, b,또는 c의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통관이 허용된다.

제132/2008/ND-CP호 시행령 제7조 2b항 b (제74/2018/ND-CP호 시행령

제1조 3항으로 개정됨) 에 따라 통관 절차시 품질검사 신청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종이신청서(Hard copy)를 제출 할 필요가 없다. 세관당국은 Single Window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한다.

수입 제품 실제 수량이 신고서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하지만, 해당 수입이 동일한 수입업체, 원산지, 동일 선화증권이 발행된 운송수단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제품으로써 검사결과를 충족한 경우, 수입자는 실제 수량에 근거하여 추가 신고가 가능하다.

(2020년3월10일 관세총국의 제1438/TCHQ-GSQL호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목적으로만 사용가능





# Why Deloitte?

Understanding that your unique concern requires unique solution, we offer meticulously carved and individually tailored solution to address your specific concern at any stage of your investment.

Our approach combines insight and innovation from multiple disciplines, industry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to help adding value to your business locally and globally from our undisputed market leader advantage.



## Contact us

###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 legal and related services.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312,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http://www.deloitte.com).

####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 Chi Minh City,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Tokyo and Yangon.

#### About Deloitte Vietnam

Deloitte Vietnam, a pioneer in the Advisory and Audit industry with nearly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Vietnam market, is part of the Deloitte Global network, one of the Four largest professional services organisations in the world. Our clients are served by over 1,000 staff located in our Hanoi and Ho Chi Minh City offices with access to the full strength of our Deloitte Asia Pacific member firms. Through our extensive network, Deloitte Vietnam delivers value-added services in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 Corporate Governance, Tax & Legal, Consulting, Audit & Assurance and Professional Training Services to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